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5-49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5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정이유

외래 관광객 2,000만 명 시대를 대비, 지속가능한 마포 관광발전을 위한 마포구의 관광 진흥 및 활성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(안 제2조)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2항 :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
- 나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(안 제3조)

### 다. 특별회계의 세입에 대하여 규정(안 제4조)

- 마포구 관광진흥센터에서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수익금 (사용료 및 임대료 포함)
- 구에서 개발한 관광브랜드 상품 및 기념품 판매 수익금
- 센터에서 운영한 관광체험 프로그램 운영 수익금

**라. 특별회계의 세출에 대하여 규정(안 제5조)**

- 구의 관광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
- 센터 및 센터에서 활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·관리비
- 관광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비 등

**마. 회계의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때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6조)**

-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도록 함

**바.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규정(안 제7조)**

**3. 참고사항**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 (회계의 구분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음

**4. 기타사항**

가. 입법예고 : 2015. 4. 23. ~ 5. 13. (제출된 의견 없음)

나. 가정복지과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다.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라. 기획예산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(4.22) 결과 : 원안 동의

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·의결(2015. 5. 19)

바.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.

사. 비용추계서 1부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관광 진흥 및 활성화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관광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특별회계의 설치)**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(이하 “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**제3조(존속기한)**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
**제4조(세입)**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.

1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진흥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에서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수익금(사용료 및 임대료 포함)
2.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서 개발한 관광브랜드 상품 및 기념품 판매 수익금
3. 센터에서 운영한 관광체험 프로그램 운영 수익금

4. 서울특별시 및 국가에서 센터 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
5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

**제5조(세출)**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1. 구의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
2. 센터 및 센터에서 활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·관리비
3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」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
4. 관광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비
5.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

**제6조(일시차입)** ① 회계의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잉여금의 처리)**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.

**제8조(준용)**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.

**제9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회계 세입의 적용례) 제4조에 따른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(합정동) 내 기부채납 시설물 사용료 부과분부터 적용한다.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 제4조(세입) 및 제5조(세출)

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- 관광진흥센터 운영 및 기부채납시설 활용에 관한 연도별 소요예산 및 내역
- 비용추계기간 : 2015. 7. ~ 2020. 6.(60개월)

#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입	○ 사용료(합정)	326,736	332,290	337,938	343,682	349,524	1,690,170
	○ 사용료(상암)			78,928	82,085	85,368	246,381
	○ 관광기념품 판매수익금		4,800	4,800	4,800	4,800	19,200
	소계(a)	326,736	337,090	421,666	430,567	439,692	1,955,751
세출	○ 관리비(합정)	4,200	4,263	4,327	4,392	4,458	21,640
	○ 관리비(상암)			1,406	1,427	1,448	4,281
	○ 사업비	270,830	296,288	324,139	354,608	387,941	1,633,806
	소계(b)	275,030	300,551	329,872	360,427	393,847	1,659,727
□ 총 비용(a-b)		51,706	36,539	91,794	70,140	45,845	296,024

### 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- 기부채납 및 공공기여 시설물 활용에 따른 수익금(사용료 및 임대료 등) 제외수입으로 조달

5. 덧붙이는 의견 : 구체적인 세입 및 세출은 차후 변경될 수 있음.

### 6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안정행정국 문화관광과 김유미
연락처	02-3153-8363

## II 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### - 세입관련

- 기부채납 및 공공기여 시설물 사용료(합정3구역, 상암DMC)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(제31조) 및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(제25조)에 의거한 산식에 의거하여 계산하며, 매년 사용료를 재산정하여야 하나 비용추계자료는 주변지역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함 (합정3구역 ⇒ 약1.7% 상승, 상암DMC ⇒ 약4% 상승)
- 사용료 산정산식 : 재산평가금액(토지공시지가 + 건물시가표준액) × 50/1,000
- 상암DMC 특별계획지구 시설 사용료는 현재 재산평가금액 산정이 제한되는바, 인근 누리꿈스퀘어 상가 월 평균임대료의 약 50%수준으로 추정하여 계산함

1차년도 사용료 산출내역		
항목	산출 산식	금액
합정3구역 문화및집회시설 사용료(2015년)	m <sup>2</sup> 당 월임대료(22,663원) × 면적(1,201.40m <sup>2</sup> ) × 12개월	326,736 천원
상암DMC 공공기여시설 사용료(2017년)	m <sup>2</sup> 당 월임대료(24,093원) × 면적(273m <sup>2</sup> ) × 12개월	78,928천원

※ 2차년도부터는 1차년도 사용료에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적용하여 추정함

- 관광기념품 판매수익금 = 2,000원 수익(1만원 상품) × 월 평균 200개 판매

### - 세출관련

- 1차년도 관리비는 인근 메세나폴리스 상가 관리비(m<sup>2</sup>당 평균 월 5,000원)를 기준으로 하였고, 2차년도 이후는 최근 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치(약1.5%)를 반영하여 추계함
- 1차년도 사업비는 문화관광과 최근 2년 관광안내체계구축 및 관광홍보마케팅 예산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였고, 2차년도 이후는 문화관광과 최근 2년 관광 관련 예산 상승률 평균치(9.4%)를 반영하여 추계함